
온천종사자교육

2011. 6.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Korea hot Spring Association

행정안전부 로고

목 차

I. 온천법	1
1. 총론	1
2.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5
3.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10
4. 수수료 및 벌칙 등	16
5. 온천전문검사 지침	18
II. 온천운영	21
1. 온천현황	21
2. 온천업무 활성화 추진계획	22
3. 온천발전 종합개념	24
4. 기타 추진중인 사항	27
III. 공중위생관리	29
1. 총론	29
2. 공중위생영업 신고	29
3. 공중위생업소 관리	31
4.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34
5.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 벌칙규정	34
6. 기타 관계법령 요약	36

I. 온천법

1. 총론

가. 온천법의 목적 (법 제1조)

▶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민소득의 향상, 여가생활시간의 증대 등으로 관광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온천이용 인구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온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짐
- 이에 따른 온천원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영구히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호·관리하고 보다 효율적인 온천의 개발·이용·관리를 위하여 보양온천 및 온천도시의 지정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나. 정의 (법 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용출(湧出)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3. “온천종사자”라 함은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 온천성분(수질) 적용기준(영 제2조)

-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
 - 각 호의 성분기준(먹는물 기준의 건강상 유해물질 3종)
 1. 질산성질소(NO₃-N)는 10mg/L 이하일 것 (무기비료, 생활하수, 공장폐수에서 발생)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₂Cl₄)은 0.01mg/L이하일 것
(유해화학 물질로서 무색의 액체이며 금속세정제로 이용 후 환경으로 배출)
 3. 트리클로로에틸렌(C₂HCl₃)은 0.03mg/L이하일 것
(금속세정제, 드라이클리닝용제, 소화제 등으로 이용 후 환경으로 배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성분에 대한 성분검사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토록 함(온천전문검사 지침에 명기)

다. 온천우선이용권자 (법 제23조)

- ①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②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리가 이전된 것임
- ③ 법률 제7856호(2006.3.3.개정) 시행전(2006.7.1.) 온천발견신고 당시,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며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권자도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없음

※ 이유 :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라는 요건과 함께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만이 해당된다. (법제처 해석 07-0364)

☞ 온천지침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없을 경우 】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온천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신속·원활한 온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천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를 “차순위 온천우선이용권자”로 인정하여야 함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내 토지굴착에 대한 우선 허가
- 온천의 이용에 대한 우선 허가
-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알선 등 필요한 지원
-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법 제7조, 규칙 제4조)

■ 법 제7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록기준 증명서류

[참고]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현황

(2011. 6. 1 현재)

기관명	소재지	비고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031)420-373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 유성구 가정동 30	042)868-3085
한국광물자원공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48	02)840-357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 6-2	042)870-7641
(주)한국중앙온천연구소	서울 금천구 가산동 680	02)2027-3470
(주)하나 엔지니어링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14	031)345-0507
(주)한국건설엔지니어링	경기 광명시 하안동 34-11	02)894-2472
(주)세기종합기술공사	충남 아산시 온천동 1487	02-578-5001
중앙건설터트(주)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8-1	02-2156-6031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온천조사·검사 종류

검사시기	종 류	내 용	관련규정
굴착허가 신청시	온천부존조사	온천자원 부존가능성 확인조사	법12조③ 영13조①-4
온천발견신고 수리시	온천공조사	온천의 수온, 수량, 수질 등	법21조② 규칙13조①②[별표 5]
	온천공영향조사	인근공에 대한 영향조사	규칙13조②-3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해제시, 온천이용허가시	온천자원 평가조사	온천원 보존실태 및 상황변화 온천의 온도, 수질, 성분 (지구내 1일 적정 양수량)	법10조, 영7조 규칙5조 지구 법16조, 영17조 규칙10조
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	정기온천 자원조사 성분분석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수질·성분변화 등 온천의 특성 (온천원 1일 적정 양수량) ※ 온천원보호지구는 지구내 모든공 일제조사 실시 주요성분, 온도, 이용에 따른 효과, 주의사항	법24조② 규칙15조① 법19조①
매 1년마다	수질검사 특정 성분분석 (유황, 유리탄산)	수질 적합여부, 성분함량, 금기증, 주의사항	법19조 규칙12조 [별표4]

마. 국가 등의 책무 (법 제3조, 법 제3조의2)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 창달과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한 이후에는 당해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지자체는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기관별 온천정책 추진

○ 중 앙

- 온천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및 지도관리
- 온천협회 승인 및 지도관리 - 국민보양온천 지정승인 등

○ 시·도지사

- 온천발전지원 세부계획 수립·이행 - 온천개발계획 승인, 국민보양온천 지정 등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온천원보호지구 고시, 온천공보호구역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 온천발전지원 세부계획 수립·이행 - 온천굴착허가, 동력장치설치허가
 - 온천발전신고수리,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공보호구역 고시
 - 온천개발계획 및 온천원보호지구 신청, 온천이용허가
 - 정기온천자원조사(5년마다), 수질 및 성분검사, 출입검사 등

바. 온천협회 (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영 제21조, 규칙 제19조)

▶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 협회는 법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가

[참고]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설립현황

1. 설립 인가일 : 2007. 7. 11
2. 사무실소재지 : 서울 종로구 당주동 2-2. 영진빌딩 301호
3. 전 화 번 호 : 02-720-5004 (팩스 : 02-723-5003)
4. 임 원 구 성 : 23명(회장1, 명예회장1, 고문3, 부회장3, 감사2, 이사13)

■ 협회의 사업

-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온천자원조사·연구사업(온천전문검사, 연구사업, 수질·성분검사 등수질·성분검사 등)
- 온천자원 관측시설 설치, 온천관리정보체계 구축
- 온천발전신고자, 온천우선이용권자, 온천종사자의 위탁사업

사.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법 제26조, 규칙 제19조)

▶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종사자 교육을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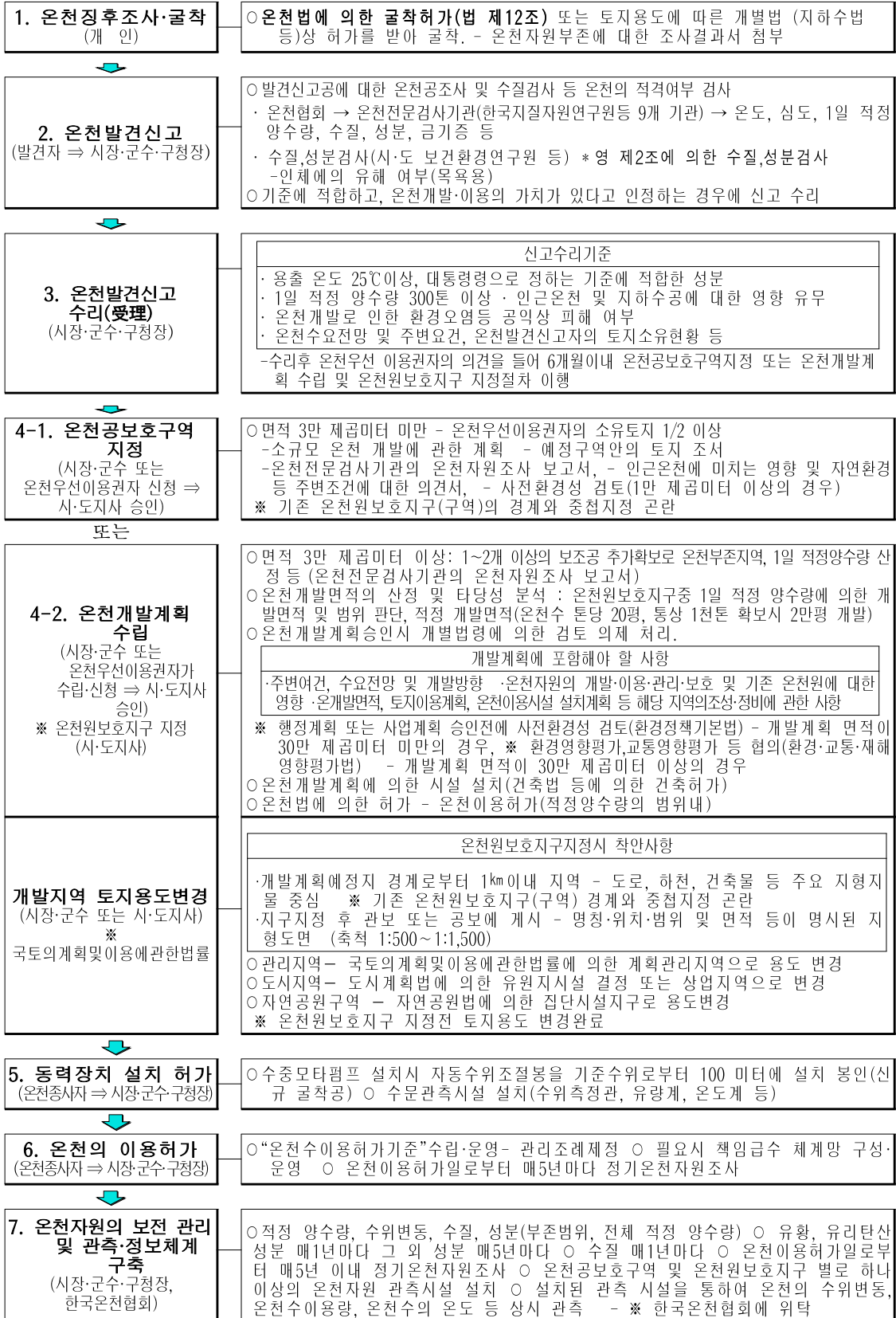
-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별 교육책임자 지정 후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이수 가능
- 교육시간 : 연간 4시간(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 포함)
 - 교육실시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 온천종사자 교육이수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전의 위생교육은 제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전 위생교육 이수토록 규정)

2.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 온천개발 · 이용 · 관리법규

<p>1. 온천정후조사·굴착 (개 인)</p>	<p>○ 법 제12조(굴착허가), 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제30조(청문) 영 제13조(굴착허가 신청),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규칙 제7조(굴착허가신청 등) - 별지 제3호 및 3호의2 서식, 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 별지 제5호 서식</p>
<p>2. 온천발견신고 (발견자 ⇒ 시장·군수·구청장)</p>	<p>○ 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 별지 제10호 서식</p>
<p>3. 온천발견신고 수리(受理) (시장·군수·구청장)</p>	<p>○ 법 제22조(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 등),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규칙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p>
<p>4-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시장·군수 신청 ⇒ 시·도지사 승인)</p>	<p>○ 법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제10조의3(사전환경성검토 등) 영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규칙 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1호의2 서식, 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고시 등)</p>
<p>또는</p>	
<p>4-2. 온천개발계획 수립·승인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시·도지사 승인·지정), 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p>	<p>○ 법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제10조의3(사전환경성검토 등),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영 제7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규칙 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고시 등), 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변경신청) -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2호의2 서식, 제6조(온천개발기준의 산정기준) - 별표 1의3</p>
<p>5. 동력장치 설치 허가 (온천종사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p>	<p>○ 법 제14조(동력장치설치의 허가) 영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규칙 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 별지 제4호 서식, 제8조의2(수문관측시설)</p>
<p>6. 온천의 이용허가 (온천종사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p>	<p>○ 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영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규칙 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 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의2(온천표시) - 별표 2, 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 - 별표 3,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등) - 별표 4, 별지 제9호 서식</p>
<p>7. 온천자원의 보전 관리 및 관측·정보체계 구축 (한국온천협회, 시장·군수·구청장)</p>	<p>○ 법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제25조(출입검사 등) 영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규칙 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 별지 제11호 서식, 제17조(허가증의 교부) - 별지 제12호 서식, 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 별지 제13호 서식</p>

■ 온천개발 · 이용 · 관리절차



가. 온천의 굴착

■ 온천굴착신고 (법 제12조, 영 제13조, 규칙 제7조)

- ▶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 포함
-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 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
- ▶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또는 토지굴착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
 -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토지의 원상회복 (법 제13조, 영 제14조, 규칙 제7조의2)

-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거나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 ▶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 준용

■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제한 (법 제15조, 영 제16조)

-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할 경우 예외
 -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2호)
-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5조)

■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경우

- 공공시설의 업무용, 농업용수 공급용
-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냉탕, 샤워 시설 등)
- 1일 양수량 기준으로 30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 ※ 온천지구내 음식점 등 소규모 영업장의 지하수 이용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가급적 불허가 조치

나. 온천발견 신고 및 취소

■ 온천발견신고 (법 제21조)

-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제1호, 제4호)
 - 온천발견 미신고자(법 제12조제4항), 허위신고자(법 제21조제1항)

■ 온천발견신고 수리 (법 제21조, 법 제22조, 규칙 제13조)

- ▶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서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검사결과와 당해 온천이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를 수리(受理)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인이 부담 - 신고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다.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법 제5조, 법 제6조, 영 제3조, 영 제4조, 영 제5조, 규칙 제3조)

- ▶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할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의 범위 3만제곱미터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 온천발견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함

라. 온천개발계획

■ 온천개발계획 수립·변경·취소(법 제10조, 영 제7조, 영 제8조, 영 제9조, 규칙 제5조)

- ▶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온천원보호지구가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된 개발지구 안에 있다면 타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적합하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시장·군수 및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될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상지역 : 온천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3만㎡ 이상인 지역
- 수립시기 : 온천발전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내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법 제11조, 규칙 제6조)

- 온천개발면적(제곱미터) = 66.2 × 1일 적정 양수량(톤)
- ※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음

■ 타법에 의한 계획에 적합한 개발계획 수립(법 제10조, 제10조의2~4)

- 온천원보호지구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발지구로 되어 있는 경우, 동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수립시 타법에 의한 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함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 공원계획
 -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 관광지 등 조성계획·개발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 산업단지개발계획

■ 온천개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 의제처리 대상 : 30개 법률 69개 조항
 - 온천법 제10조의2제1항에 있는 30개 법률 69개 조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 등

▶ 종전에는 온천개발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하였으나, 온천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정된 온천법(10.2월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토록 함

마.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법 제10조의2)

▶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함

※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취소시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바.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법 제14조, 영 제15조, 규칙 제8조, 규칙 제8조의2)

- ▶ 온천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동일한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1호)
- ▶ 동력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유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제1호)

3.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가. 온천의 이용허가 (법 제16조, 영 제17조, 규칙 제10조)

- ▶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음
- ▶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에서 공중의 음용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 ※ 온천을 허가받지 않고 이용할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2조제2호)
 - ※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3호)
- ▶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불허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 허가의 신청서류

- 온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온천이용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 온천의 이용계획서
 -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법 제19조, 규칙 제12조)
 - 온천공 현황(양수시험결과 포함)

-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부동산 등기부 등본(목욕용 허가신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을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 허가의 기준

- 온천의 이용허가는 산업용과 난방용보다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함
- 다만, 온천개발계획에 의하여 온천을 목욕용 또는 음용에 이용하고도 남는 경우
 -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공중시설
 - 온천원보호지구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 ※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온천법시행규칙 등에 명기되어야 가능함

☞ 온천지침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수 공급은 온천법시행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므로 온천이용허가시 유념할 것(현재 미운영)

■ 온천이용이 가능한 산업·공중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
-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조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 온천허가량

- 온천이용허가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조사한 1일 적정 양수량의 범위안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원칙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당시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한 1일 적정 양수량의 범위내
 - 예외 : 온천수 이용량의 부족,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가 확보한 온천수의 1일 적정 양수량 범위내에서 가능

나. 일시이용 허가 (영 제17조제4항)

■ 일시이용허가 요건

-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인 이용허가
- 온천우선이용권자이면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같은 명의로 준공허가를 받은 목욕장·숙박시설 등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 ※ ‘목욕장과 숙박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과 숙박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설

[참고자료]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과 숙박시설 정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숙박업 제외시설]-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장업”이라 함은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숙박업 제외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

■ 허가량 및 허가기간

- 이용허가량 기준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전 - 1일 적정 양수량의 50%
- 이용허가기간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온천개발계획)에 의한 정식 허가시까지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기간 연장 가능
- ※ 일시이용허가 후 3년 경과시까지 온천원보호지구(구역) 지정 등 개발절차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연장허가 금지

다.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법 제18조)

■ 온천이용허가 취소

- 온천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때
 - ⇒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온천이용의 제한 명령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1년 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수질·성분 검사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3개월 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이 나올 때 ⇒ 이용허가 취소

- 시장·군수는 온천이용허가 취소 처분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규칙에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함
- 위 조항의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함

1 온천수 공급 배관관리

- 온천이용을 받은 자는 온천수에 지하수를 섞어 사용하면 안되며, 위반시 온천이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됨
- 온천수 공급을 위한 배관 파이프라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치
 - 온천이용시설 신규설치시 온천수 배관라인에는 빨강색, 지하수 배관라인에는 파랑색으로 표시(테이프 피복가능)
 - 기존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온천수 또는 지하수 공급관로를 따라 2~3미터 간격으로 5cm 내외의 테이프로 표시

2 온천이용시설에서는 온천수 이용에 대한 1일 관리대장 작성·비치

- 온천이용허가량에 의한 사용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온천이용시설에서는 온천공별로 온천수 사용량 등을 작성한 대장 관리

라. 온천의 보전·관리.

■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법 제24조, 규칙 제15조)

- ▶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기타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26조제2호)
- ▶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 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음

■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법 제24조의2, 영 제20조)

-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함
-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 및 그 밖에 온천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법 제25조, 규칙 제18조)

- ▶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성분·용출량 및 이용상황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음
-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법 제19조, 규칙 제12조)

- ▶ 온천종사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마다 시장·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특이성분(유황, 유리탄산)에 대한 성분검사를 받아야 함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벌금
- ▶ 시장·군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온천이용시설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 시장·군수는 수질 및 성분검사 결과 온천으로서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음

검사기관 · 검사주기 · 검사항목 (별표4)

구 분	검 사 기 관	검 사 주 기	검 사 항 목
수질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으며,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연 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 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	인체에의 유해여부 (음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음용적합여부를 포함) 기준 초과여부
성분검사	온천전문검사기관 (시장·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분)	매5년 1회이상(단 유황·유리탄산 성분 연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 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	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 따른 효과 4.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 유효기간 경과조치 : 성분검사기간과 정기자원조사기간이 동일년도인 경우 정기자원조사시 성분검사를 동시에 수행

예) 성분검사는 2010.1.5, 정기자원조사는 2010.8.5인 경우 성분검사는 2010.8.5.까지 자동연장 됨

■ 정기자원조사 (법 제16조)

- 온천이용의 유효기간은 5년단위로 하며, 5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 24조에 따른 온천자원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
- 유효기간 1개월 이전에 조사보고서 제출

■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법 제17조, 규칙 제11조)

- ▶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의 방법 그밖에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 시장·군수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을 공중의 목욕용으로 허가하는 경우 그 수질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하여는 [별표3]을 적용

온천목욕장 수질기준 (규칙 제11조)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목욕장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욕수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온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수질기준 적용을 받음
 - 원 수 :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ml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욕조수 :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1ml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온천의 공동급수 (법 제20조)

- ▶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음
- ▶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4. 수수료 및 벌칙 등

가. 처리기간 및 수수료 (법 제31조, 영 제15조)

○ 수수료 납부방법

- 해당 시·군·구의 수입증지로 납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비고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30일	없음	
온천발견신고	10일	없음	
토지굴착등(변경) 허가	5일	신규굴착 : 공당 6만원 증 굴 : 공당 3만원	
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	5일	설치 : 개소당 3만원 변경 : 개소당 1만5천원	
지하수개발 허가	5일	시·도조례에서 정한 금액	
수질·성분 검사	5일	시·도조례에서 정한 금액	수탁기관이 정한 수수료
온천이용허가	5일	건당 10만원	

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기준 (법 제5조제6항)

■ 처리기준

- 2차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법정판결 또는 심의 등에 의해 보고서상 허위내용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는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이 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1 호	등록취소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2 호	등록취소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3 호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4 호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5.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4 호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5 호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다. 벌 칙 (법 제32조~36조)

위 반 사 항	벌 칙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없이 토지를 굴착한 자 - 법 제12조제4항의 온천굴착신고를 아니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 보양온천 지정을 받지 않고 보양온천 표시를 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 온천관련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 온천표시를 사용한 자 - 허위로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없이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지하수를 개발한 자 -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온천자원의 보전·관리등에 관한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의무를 위반한 자 	3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온천원보호지구내 건설공사 등 토지굴착으로 온천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때 	2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함	법 제36조

라. 과태료 (법 제37조)

■ 과태료 부과대상

위 반 사 항	벌 칙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천이용업소에서 검사결과 및 주의사항 등의 게시의무를 위반 한 때 (법 제19조제3항) 시장·군수가 요구한 온천시설 관리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5조제1항)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법 제26조제1항)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을 부과·징수

5. 온천전문검사 지침

가. 성분검사

▶ 온천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온천수의 수질 특성을 규명한다.

■ 수소이온농도에 의한 분류

~ 3.0 미만	산성	3.0 ~ 6.0 미만	약산성
6.0 ~ 7.5 미만	중성	7.5 ~ 8.5 미만	약알칼리성
8.5 ~	알칼리성		

■ 주요 이온성분에 의한 형의 구분

- 주요 이온성분(양이온성분 Na, Ca, Mg, K; 음이온성분 Cl, SO₄, HCO₃, CO₃)을 meq/ℓ 로 환산한 후, 양이온과 음이온성분 각각을 100%로 비교하여 25%이상인 성분으로 형을 표시한다. 이 때 25%이상인 성분이 두 개 이상일 때 가장 높은 값의 성분을 앞에 놓고 두 번째 성분은 괄호로 묶는다. 예) Na(Ca)-HCO₃(SO₄) 형

■ 광천온천의 분류(염화물광천온천, 황산염광천온천, 탄산염광천온천)

- 염화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ℓ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Cl 형인 경우를 염화물광천온천이라 한다.
- 황산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ℓ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SO₄ 형인 경우를 황산염광천온천이라 한다.
- 탄산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ℓ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CO₃ 형인 경우를 탄산염광천온천이라 한다.

■ 미량성분에 의한 분류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명칭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때 성분의 기원이 오염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케이싱의 영향 등일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황온천 : 총고용물량에 관계없이 total S-2 성분함량이 0.1mg/ℓ 이상인 온천을 유황온천이라 한다(이 때 SO₄+2성분은 황산이온성분으로 따로 표시한다). total S-2 성분함량은 S-2, HS-, H₂S로 이루어지며, 대수층의 상태가 환원상태임을 의미한다.
 - 탄산온천 : 탄산가스(CO₂) 성분을 250mg/ℓ 이상 함유한 경우를 탄산온천이라 한다.
 - 실리카온천 : 실리카(SiO₂)성분의 함량이 40mg/ℓ 이상인 온천
 - 철온천 : 철(Fe)성분의 함량이 10mg/ℓ 이상인 온천
 - 구리온천 : 구리(Cu)성분의 함량이 1mg/ℓ 이상인 온천

나. 온천전문검사 운영절차

■ 목적

- 온천법령에서 정한 온천전문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특)한국온천협회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온천전문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조사과정에서의 공신력을 확보함

■ 위탁의 대상

- 온천전문검사 : 온천부존조사,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 온천자원평가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성분검사 등
-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및 수위변동실태 조사 등

■ 위탁운영 체계

- 온천전문검사가 필요한 시장·군수 또는 온천종사자 등이 온천협회에 위탁
- 위탁받은 온천협회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온천전문검사 의뢰
- 의뢰받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협회와 약정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약정기일 내 검사보고서 작성·제출
- 협회는 학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상이 없을시 위탁을 의뢰한 자에게 검사결과 통보

■ 위탁계약 체결

- 행정안전부가 정한 온천전문검사의 종류별 품셈표를 적용하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원가계산의 작성 등)에 의함

■ 운영사항의 관리·감독

- 온천협회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온천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온천전문검사 위탁 운영사항의 전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

■ 온천전문검사 배분원칙

- 연간 계획된 온천전문검사의 총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온천전문검사 기관간 적정 배분 수행 원칙
- 온천전문검사기관별 검사 배분의 우선순위는 협의회에서 정한 순서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는 행정안전부 등록순서에 의함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종류별 우선권

- 정기온천자원조사 : 예정순위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하되, 동일년도의 인접지역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조정
- 성분검사 : 당해 온천공에 대한 정기온천자원조사를 수행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수행

■ 학술위원회 설치·운영

- 온천전문검사 위탁운영의 감리·감독 및 기술자문 역할 수행
- 온천전문검사의 효율성 제고와 조사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 운영절차 등 제정·시행 ※ 학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온천협회 정관으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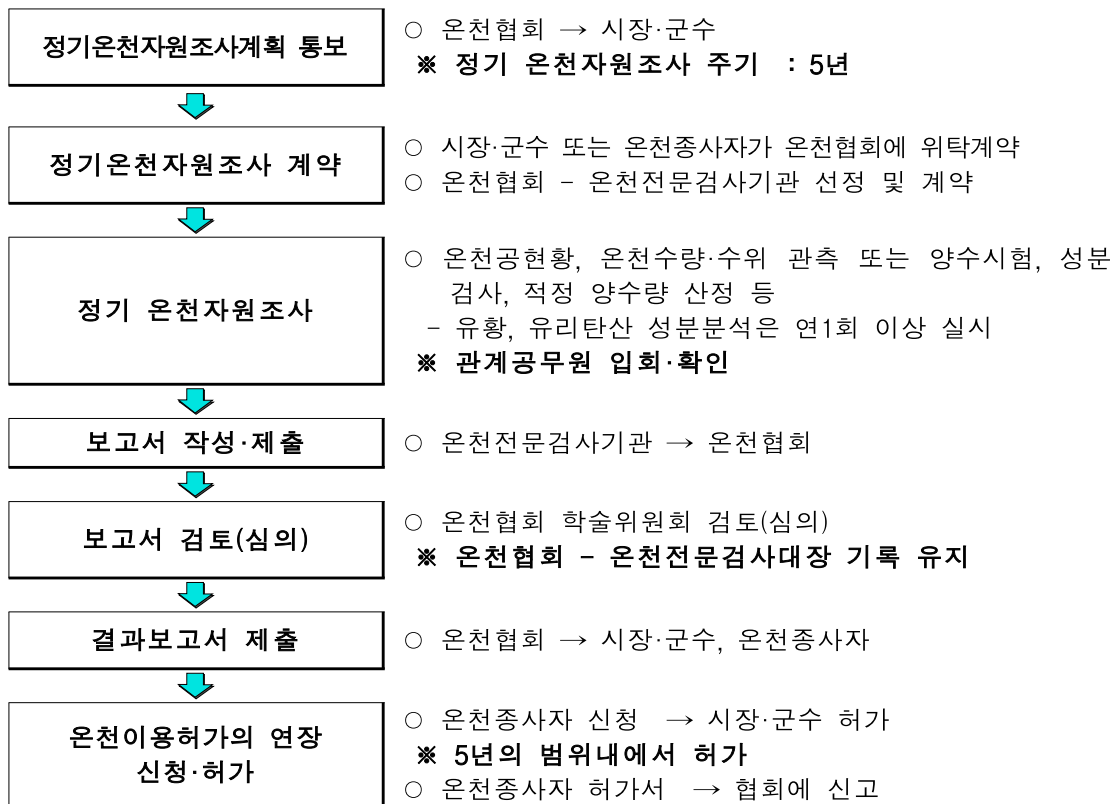
■ 자료의 보존

- 온천전문검사보고서 및 각종 조사결과를 기재한 온천전문검사대장을 작성하여 10년 이상 보존
- 온천자원평가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등을 포함한 온천전문검사 결과는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에 활용

■ 회계처리

- 온천전문검사 위탁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 계정과목으로 운영
-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온천전문검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온천전문조사 추진체계(예 : 정기온천자원조사- 다른 전문조사도 동일함)



Ⅱ. 온천운영

1. 온천현황

가. 현주소

■ 전통온천의 침체

- 국민소득 2만불시대와 노령화사회를 맞이하여 관광 및 웰빙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온천이용객수 증가 둔화 경향
 - ※ '97년 4,200만→'03년 5,300만→'07년 5,000만→'08년 5,300만→'09년 5,400만(소폭 증가추세 : 온천대축제 행사 개최 등 온천산업활성화 추진 영향)
- 전통온천지 노후화, 수요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시설·서비스 공급체제 미흡, 썩질방·위터파크 등 경쟁업종의 대량출현
-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온천지로서의 특성과 정취를 살린 종합적 관광여건 미조성 및 제도적 지원체제 미비

■ 무분별한 온천 난개발

- 지가 상승을 기대한 무분별한 토지굴착후 자금부족, 타법상 규제 등에 의한 장기방치로 지하수 오염 및 국토난개발 초래
- 온천의 밀집분포
 - 등록온천 10개소 이상 지자체 - 포항, 강릉, 속초, 인천강화군 등
 - 등록온천 432개소 중 1/2이상이 부산, 울산, 대구를 포함한 경상남·북도에 밀집
- 온천공의 밀집분포
 - 온양, 덕산, 유성, 부곡, 동해 등 1개 온천지역에 20개공 이상 분포

< 전국 온천현황('09.12월말 기준) >

- 온천지구(432개), 온천업소(515개), 온천공 수(1,170개)
- 온천이용객수는 연간 약 54백만명 정도
- 온천수 온도는 최하 법정 25℃~최고 78℃(전국 평균 30.3℃)
- 굴착심도는 최저 70m~최고 2,003m(전국평균 705m)

나. 개선한 사항

■ 온천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홍보추진

- 국가, 지자체의 온천산업 활성화 책무이행(온천법 제3조,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 : 행안부, 지자체, 국민일보, 관광공사, 협회, 학회 공동 협력식
- 온천이용 홍보 추진
 - 아름다운 온천책자 발간, 온천 홍보포스터 제작·배부, 일간지 광고게재

- 보양온천 도입, 온천의 의료적 효능연구, 온천의 우수성 보고서

■ 온천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규제완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국민보양온천 제도 도입·운영, 온천로고 변경 - 온천법시행규칙 개정('08.3.24)
- 온천발견신고 제한 : 직선거리 1,000m
- 동일 온천원에서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제한
- 온천법 개정(시행 - '10.8.5)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법 : 온천개발절차 통합·일원화 및 개별법령 인·허가 의제처리, 온천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방안 규정, 온천자원의 효율적 관리·보전을 위한 관측·정보체계 구축, 온천협회에 온천전문검사 위탁 등 ○ 시행령 : 온천공보호구역 범위축소(4만㎡ ⇒ 3만㎡), 온천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관련 기준, 절차 등 보완, 굴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마련, 온천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산업·공중시설 범위 신설 등 ○ 시행규칙 : 온천공 보호구역·온천원보호지구의 고시절차 규정, 온천수 특정성분의 검사주기 조정, 온천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 온천발전전략과제 연구 추진

- 온천수 음용화 방안, 온천치료 건강보험제도 도입방안, 온천수 열에너지 활용방안, 온천도시 조성방안 등

2. 온천업무 활성화 추진계획

■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통한 온천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 '07년 이후 매년 정례적 개최로 범 국민적 온천이용“붐”조성
- 온천요금할인, 수기공모, 온천체험, 건강미인선발, 가요제, 세미나 개최 및 지역축제와 연계,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보양온천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온천치료의 의학적 효과를 규명

< 보양온천 지정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수 기준 : 온도 35℃이상 또는 탄산천·유황천·총고용물 함유 ※ 전국 온천 432개 지구중 116개 지구 해당(26.8%) - 내부시설 기준 : 응급조치실·운동욕장 등 온천을 통한 치료·요양이 가능한 시설 - 주변환경 기준 : 공기청정도, 소음도, 경관 등 - 정책적 기준 :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정도
--

- 지정기준 개선 - 기존 시설기준 외에 지구 또는 구역단위 지정기준 마련
 - 현재 보양온천 지정기준은 온천수(온도, 성분, 수량), 보양온천시설(건강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보양온천 환경 기준(필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가지임

■ 온천 건강보험 도입방안

- 저렴한 비용으로 보양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도입
 - ※ 프랑스(약물사용비 3~40%감소), 일본(온천요양시 의료비 공제)
 - 도입방안 공론화를 위한 세미나, 공청회, 설명회 개최 추진
 - 온천수로 보험적용 가능한 항목(수치료)에 시범적 적용추진
 - 온천전문의 제도도입 검토

■ 온천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한 온천자원관측 및 정보체계시스템 구축

- 온천자원의 기초자료 분석을 위한 자동관측시설 설치
 - 온천공에 대한 온천수위 모니터링 및 수온 관측 등
 - 온천의 올바른 정보지식을 위한 정보시스템 제공
- 10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주요 100개 온천공에 대한 관측장비 설치 및 모니터링
 - 매년 약 2~3개 온천지구·구역에 대한 수위, 수온 관측장비 설치
 - ※ (특)한국온천협회에 의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관리체계 구축

■ 온천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수익 창출

- 고온의 온천수 열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시스템 설치 보급
 - 고온 온천수 자원은 신재생에너지(지열에너지) 설치비 지원방안 강구
 - 에너지효율 장려금 적용 추진
- 부곡온천 및 동래온천 등 계획예정

■ 온천수 이용 화장품, 비누, 의약품 등 개발

- 시제품 및 제품 출시 : 예) 강릉, 강화, 동해 등

■ 온천수 음용화 제도 도입

- 지하수의 음용기준은 먹는물관리법령에 근거, 온천수는 특성상 다양한 성분으로 인해 음용화는 곤란
 - 온천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으나 광물성분이 함유되어 먹는물 기준중 심미적 기준(색도, 탁도, 경도 등)에 불부합
 - ※ 광물질이 함유된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07.8)으로 별도 수질기준 마련
- 온천수 치료효과 검증후 건강 치료용으로 제한적 음용(환경부)
- 먹는물 기준을 충족하되 심미적 기준 배제 방안 먹는물관리법 개정 또는 별도의 온천수 음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온천 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온천도시 육성 방안 및 대상지 지정·선정 기준 마련
 - ※ 장기 검토과제(시행령에 지정기준 마련 선행)

■ 온천산업에 대한 세제부담 완화

- 조세부담 : 관광단지 수준으로 완화
 - 취득세·등록세·농지개발부담금 50% 감면, 전기료, 하수도세 인하, 지역개발세 경감

■ 해외 우수온천 벤치마킹 실시

- 온천상품이 활성화 되어있는 가까운 일본 등 온천 우수선진국에 대하여 행안부 자체 또는 협회 지자체 등과 연계한 벤치마킹 국외여행 추진

■ 신규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온천서비스 및 시설 수준 향상을 위한 발전과제를 발굴 육성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 온천업무 추진관련 관계부처에서 수용되지 않는 과제에 대하여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협의

3. 온천발전 종합개념

가. 목표 : 깨끗한 온천, 건강을 지키는 온천, 국민과 함께하는 온천

나. 추진방향

- 온천자원의 체계적 관리 : 양질의 온천수를 계속적으로 공급
- 온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 ○ 외국 관광객 유치

다. 온천이용추세

- 기존 : 단순 관광, 목욕 및 물놀이 시설
- 추가
 - 휴양 : 엔터테인먼트 시설, 물놀이 시설, 숙박시설의 대형화(위터파크, 골프, 리조트)
 - 보양 : 보양온천 시설

라. 온천에 관한 여론

- 이용목적

구분	휴식	목욕	피부병 치료	물놀이	미용증진	계
%	64.0	25.9	3.3	2.4	4.4	100

※ 휴식 및 목욕에 위한 여론 조성

- 온천 결정시 고려요인(다수 선택)

구분	좋은 물	좋은 시설	위생	교통편리	주변경치	가격저렴
%	80.0	33.7	29.3	23.8	18.3	8.8

※ 고연령층은 보양, 저연령층은 휴양(내부시설 및 교통) 위주 홍보

- 온천물의 효능에 대한 인식

구분	특수성분	주변의 환경	물의 온도	효능 없음	계
%	60.8	16.6	7.0	15.6	100

※온천수의 성분별 효능을 의학적으로 검증, 온천별 함유성분을 홍보

- 일반 목욕시설 대비 온천의 매력 포인트(다수 선택)

구분	성분과 온도	시설 우수	편안한 분위기	주변 경치	위생, 청결
%	83.3	32.0	22.6	50.6	11.4

※차별화 요인 : 건강에 대한 기여도, 물의 성분과 온도, 뛰어난 주변 경치

- 온천시설과 일반목욕시설 구분 방법

구분	간판, 상호	온천허가증	온천마크	구별 못함	계
%	25.1	26.4	26.3	22.2	100

※일반목욕시설은 사용하지 못하고, 온천만이 사용할 수 있는 로고의 적극 홍보

- 온천시설내 필수 구비시설(다수 선택)

구분	노천탕	찜질시설	치료시설	물놀이	안마	피부관리실	운동시설
%	48.3	46.1	39.6	20.7	16.1	15.6	13.6

※20~30대는 대형물놀이 및 운동시설 선호, 40대 이상은 전형적인 온천선호

마. 발전방향

-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질 높은 온천문화 정착
- 관련단체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의료계, 지질학계, 당국, 온천협회, 사업자)
- 온천로고 보급 및 홍보 : 온천외 무단 사용방지를 위한 관리철저
- 온천시설 및 서비스 관련 사항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철저한 관리
- 40대 이상 맞춤형서비스 : 건강증진을 위한 보양온천, 성분검증 및 홍보, 치료시설 구비
- 20~30대 맞춤형서비스 : 휴식을 위한 테마온천, 관광시설 연계
- 온천치료 목적 건강보험제도 도입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온천치료의 의학적 효과를 규명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온천요양을 할 수 있는 건강보험 도입
- 온천관리 행정의 과학화 및 체계화
 - 온천의 효율적·계획적 관리기반 마련 : 온천 부존량, 양수량, 수위 등 기초데이터 측정 및 조치로 전국 온천 DB 및 포털시스템 구축
 -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강화
 - 기존의 온천과 차별화 : 전문인력 양성, 관리매뉴얼 개발, 치료전문시설 설치

바. 온천발전 종합개념도

■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협회 창설로 총괄기능 확보 - 회원사가 합치면 강력한 “힘” 발휘 ○ 온천의 활용가치 증가 - 주5일제 근무, 고령화 시대 등 - 웰빙시대를 주도하는 문화관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업계 공동마케팅 기능 취약 - 대형테마파크: 적극적인 판매전략 ○ 온천시설의 노후화 ○ 국민은 온천 성분/효능 미숙지 ○ 교통 불편, 관광 상품화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국정과제에 온천경쟁력 강화 - 한국적 명품콘텐츠가 바로 경쟁력 - 정부목표: 관광 세계 31위 → 20위권 ○ 우리 농산물 → 신토불이 - 온천 → 온고지신(溫故知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위축과 경쟁 심화 ○ 온천 경쟁사 증가 - 콘도, 찜질방, 스키장, 워터파크

■ 대책

온천 르네상스 재현 (국민건강 향상과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



국민정서 유도(광고)

- 다른 레저를 즐기다가도, 저녁에는 온천으로 (휴양, 보양 등)
- 온천에 가면 지역특성에 맞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풍부

대외적(통합 매출)

- 이용하기 편리하고 효율적인 통합 전산망 구성 및 판매
- 공동 회원권(패키지 상품 등) / 소비자 불만 접수 및 조치
- 유명 마케팅 활용: (예)모바일 승차권- 핸드폰으로 기차좌석 예매, 발권

대내적(시스템 연계)

- 온천회원사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상호 협조 및 이해 증진

브랜드화 마케팅(기획력)

- 회원사 공동 광고, 판촉 / 시장변화, 소비자 행동에 대한 능동적 대처
- 병원투어, 관광과 연계된 온천 패키지

관련 법 및 운영, 제도 개선

- 온천회원사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정부, 관계기관, 온천법 등에 반영



- 국가경쟁력 강화(국정과제) → 온천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 해외온천 : 마케팅 다양화에 적극 활용

4. 기타 추진중인 사항

가. 국제온천기후연합(FEMTEC)개최 필요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이며, 세계에서 스파 및 건강기구의 대표적인 협회이며, 한국을 포함하여 62개 회원국이 있음. (일본, 중국, 러시아, 이태리, 대만 등)
- 국제온천기후연합(FEMTEC)총회를 국내에 개최하여 국가위상을 높이며, 온천관광객의 증가로 매출증대에 기여함.
- 일본, 중국, 대만은 개최하였으나, 한국만 개최하지 못하였음.

나. 단체보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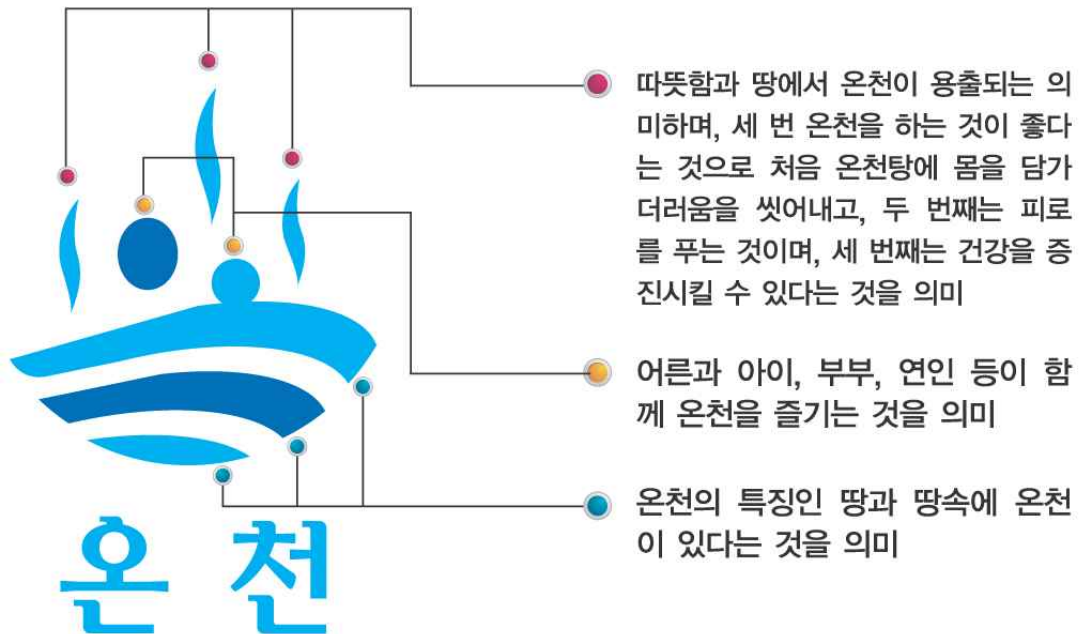
- 화재보험 등을 당협회를 통해 가입하면 기존 보험료보다 대폭 할인가능
- 보험료의 10%(6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회비납부로 간주함.

다. 온천수의 효능 인증서 발급 (대한온천학회 공동)

라. 온천 소개

- 신온천 의학 등 온천자료 책자 보급
- 중국온천 : 천목온천, 탕박온천

※ 참고 : 신 온천로고의 부분별 의미



온천인증패 구매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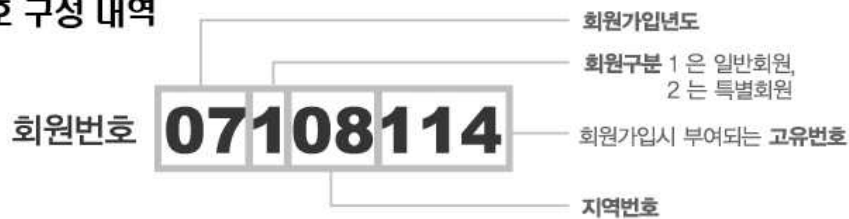
회사명		대표자 성명	
대표번호		신청 수량	개
신청인		신청인 핸드폰	
인증패 받을 주소	우편번호		
	시(도)	구(군)	동(읍,면)

※ 1개당 20만원, 팩스번호 02-723-5003
 (입금통장 : 농협 003-01-210524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한국온천협회 회원사 인증패 내용



회원번호 구성 내역



인증패

- 온천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정부승인 온천과 일반목욕탕(숙박업소) 등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를 구별하여 국민이 인식되도록 하여야 함
- 새 온천로고를 전국적으로 통일한다면 국민이 쉽게 온천과 일반목욕탕을 구분할 수 있음 → 인증패 제작 및 판매 중

Ⅲ. 공중위생관리

1. 총론

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비전 :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및 국민만족도 향상

■ 목표

-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 향상 및 경쟁력 제고로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추진전략

- 사전지원적 규제합리화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고용 및 산업 연관 효과 극대화 ○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나. 공중위생관리 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적용대상
 - 공중위생영업(6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이용시설(6종) :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다. 공중위생영업 정의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예 :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등
- 목욕장업 :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하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예) 공동목욕탕, 한증막, 사우나, 찜질방 등

2. 공중위생 영업 신고

가. 영업의 신고

■ 신고의 의미

-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의 신고는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그 영업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관청에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기타 법령 등에서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수리결과를 회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요건적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미신고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영업의 신고절차

- 신고관청 : 영업소 소재지 관할시·군·구
- 첨부서류 :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교육필증(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영업의 신고수리 : 즉시

-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교부한 후 15일 이내)
- 업종별 시설 및 설비 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업종	시설 및 설비 기준(개정 2009.5.15)
숙박업	기준없음
목욕업	<p>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에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에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하고, 밀실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p> <p>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p> <p>바. 욕조수를 순환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p>

나. 변경신고

- 신고대상 변경사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 제출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제5호서식), 영업신고증 등
- 변경신고 처리 : 즉시
 - ※ 신고증 교부 : 기존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되 이면에 그 내용을 기재

다. 지위승계신고

■ **지위승계신고 대상 : 승계후 1개월 이내**

- 영업 양도시 양수인, 영업자 사망시 상속인
-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폐업신고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 제출서류 : 영업폐업신고서(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 및 영업신고증

3. 공중위생업소 관리

가. 보고 및 출입·검사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 권 한 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 기 :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해 필요한 보고요청
- 소속 공무원은 영업소·사무소, 공중이용시설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검사 및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 열람 가능
- 상기 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함.
-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업무를 행하여야 함(단,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나. 공중위생감시원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

■ **공중위생감시원의 직무**

- 공중위생감시원의 임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공중위생영업 신고관련 시설 및 설비의 확인
-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검사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

■ 공중위생영업소 지도점검

- 시·군·구 : 공중위생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무신고 영업소에 대한 확인
- 경찰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성매매행위알선등행위 처벌에관한 법률」, 「의료법」(안마사에관한규칙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 위생감시 준비사항

- 점검표 및 확인서(지침 별지 제2-1~2-4호 서식), ○ 카메라 및 통신장비
- 공중위생관리법령집 및 관련 규정집, ○ 공중위생감시원증
- 검체수거에 따른 수거증 및 수거에 따른 준비물 등

■ 위생감시 대상 및 중점 점검내용

- 공통사항 :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 숙박업 : 숙박업소 청결 등
- 목욕업 : 밀실설치, 탈의실내 불법 감시카메라 설치 등 확인

■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업종	준수사항
숙박업	<p>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전염병예방법 소독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 및 여관(객실 수 20실 이상)은 4월부터 9월까지는 1회 이상/1월, 10월부터 3월까지는 1회 이상/2월 소독하여야 한다.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 객실의 먹는 물은 끓인 물이거나 먹는 물 관리법령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p>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수는 별표 2 의 I.수질기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p>다. 환기 및 조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

	<p>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룩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p>라. 그 밖의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는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목욕업	<p>가. 목욕실 등의 청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장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한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 욕수는 별표2의 I. 욕수의 수질기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수돗물 사용하는 경우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p>나.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한실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안과 밖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p>다. 조명 및 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p>라. 그 밖의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성 질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탕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탕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는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기에 걸렸거나 만5세 미만 또는 전신쇠약증세 어린이 - 수축기혈압이180mmHg 이상인자 -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인 자 - 노약자·임산부·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 출혈을 많이한 자 ○ 법 제2조 제1항 제3호나 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 목욕장안의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 법 제2조제1항 제3호나 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소안에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

4.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제15조의2 및 시행령 제9조의2)

■ 업무범위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기타 공중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위촉권자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 명예감시원 운영

-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시·도지사는 활동지역을 지정하여 시·군·구별로 명예감시원을 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활동지역과 시군구별 배정인원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명예감시원을 배정받은 자치구에서는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명예감시원의 활동일수는 년30일 이내로 한다.

■ 명예감시원이 신고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적발내용을 신고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안별로 행정처분등 조치를 하거나 행정처분등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발내용을 통보받은 당해기관은 위반내용이 명백할 때에는 필요한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신고한 명예감시원과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에게 즉시 회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 벌칙규정

가. 과징금

■ 과징금 정의 및 부가·귀속

-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당해 위반사항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같음하

여 금전을 부담하게 하는 행정 제재금

-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당해 시·군·구에 귀속

■ 과징금의 산정기준(시행령 별표1)

- 영업정지 1월은 30일 기준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나. 과태료처분(법 제22조)

■ 과태료

-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 위반행위(행정질서벌)에 대한 제재로서 일종의 금전벌
- 행정형벌은 행정목적에 직접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인데 반해 행정질서 벌은 신고의무 등을 게을리한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 즉, 행정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부과대상 및 금액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금액(만원)
1. 법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1항 제1호	30
2.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원수의 수질기준을 위생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1항 제1호의2	100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을 위생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1항 제1호의2	70
4. 법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1항 제2호	50
5. 법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1항 제3호	50
6.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2조제1항 제4호	100
7.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22조제1항 제5호	100
8. 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2항 제6호	20

다. 벌칙 규정(법 제20조)

■ 벌칙

- 벌칙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지권에 의거 과하는 제재로서 행정청에서 사법당국에 고발 등에 의거 조치됨

■ 대상 및 형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영업(법 제3조 제1항)
 - 영업정지명령·일부시설의 사용중지명령·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시설을 사용하거나 영업한 자(법 제11조 제1항)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조 제1항 후단규정)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제3조의2)
 - 건전영업질서유지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제4조제7항)
-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10조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또는 면허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자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6. 기타 관계법령 요약

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 2009.8.7)

제3조(준수사항)

1.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서·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벌칙)

준수사항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청소년보호법(시행 2008.2.29)

제17조(판매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 의 유흥을 돋구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벌칙)

-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26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4.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 학교보건법 (시행 2008.3.21)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행위금지)

13. 호텔, 여관, 여인숙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의 상대정화구역내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라. 전기사업법 (시행 2009.11.22)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08.12.26)

○ 시행령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1. 근린생활시설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찜질방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 호텔·여관·여인숙·모텔

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 2005.3.24)

제20조(벌칙)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

②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별지제2-1, 2호서식]

공중위생업소점검표

(숙박업)

구분	점 검 사 항
신고사항	- 영업신고여부, - 영업변경신고여부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객실20실 여관급 이상 숙박시설은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4월부터 9월까지는 월 1회 이상, 10월1일부터 3월까지는 2월마다 1회 이상 소독을 실시)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일광 기타 방법에 의하여 알맞게 건조시켰는지 여부. - 객실의 먹는 물은 끓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깨끗한 용기에 비치하는지 여부 - 충분한 환기가 되고 있는지 여부 -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은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은 20룩스(단, 복도 및 계단은 심야에는 10 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는지 여부 - 업소 안에 출입·검사 기록부를 비치하였는지 여부 - 업소 내에 신고증 및 접객대 요금표 게시 여부

(목욕업)

구분	점 검 사 항
신고사항	- 영업신고여부 - 영업변경신고여부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욕조 및 샤워기 갖춘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 설치 여부 - 발한실내 발열기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설치 여부 - 발한실의 내부가 보이는지 여부 - 욕조수를 순환시키는 경우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 설치 여부 - 무인감시카메라설치(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설치금지) 경우 안내문 게시 여부 - 탈의실, 욕실, 휴식실 구조형태 적합 여부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장 시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 수건, 가운,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시 세탁한 것 제공 여부 - 발한실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주의사항 안내문 게시 여부 - 입욕금지자의출입여부(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 만취자 등) - 목욕실, 탈의실에 5세 이상의 남녀를 같이 입장시켰는지 여부 - 이성 입욕보조자가 있는지 여부 - 소독을 한 이·미용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이·미용기구의 분리 비치 여부 - 영업신고증, 요금표의 게시 여부 - 목욕장 및 부대시설의 매일 청소 및 배수시설 수시 청소 여부 - 업소 내 조명도 준수 여부,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 비치 여부 - 찜질서비스 영업을 하는 경우 22시 이후 05시까지 보호자 동행 없이 청소년 출입행위 여부

집필

온천법	이종태	(특)한국온천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주)한국중앙온천연구소 소장
온천운영	강윤석	(특)한국온천협회 감사 호텔 덕구온천 본부장
공중위생관리		보건복지부

본 교재는 온천종사자 교육을 위한 교재로써 행정안전부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천종사자교육

인쇄일 : 2011년 6월

발행일 : 2011년 6월

발행처 : 행정안전부,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2 영진빌딩 301호

☎ 02-720-5004

인쇄처 : 경민기획
